

「 방 송 법 시 행 령 」 일 부 개 정 령 안

방송통신위원회

법제처 심사 전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) ① 이사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가 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가 법 제55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55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5조의2(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) ① 이사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② 이사회가 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 ③ 이사회가 법 제55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 ④ 법 제55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	
연락처	(02) 2110 - 1415